

정관 개정안 303

굵은 글꼴의 취소선은

삭제된 내용을 나타냄

굵은 글꼴의 밑줄은 추가된

내용을 나타냄

제 13조 수익

다음과 같이 지부 조합이 국제 노조에 전달하는 회원 정보의 일부로 집과 휴대 전화 번호를 포함하도록 제 13조 5(a)항을 수정한다.

제 5(a)항. 지부 조합의 비서-재무국장은 정확한 이름과 주소(가능한 경우, 이메일 주소, 집 및 휴대폰 전화 번호 포함) 및 국제 집행위가 지정한 기타 회원 정보를 국제 비서-재무국장에게 전달해야 한다. 매달 모든 주소 변경 사항, 가입 또는 재입회한 모든 회원의 이름 및 주소, 수익이 창출된 기타 모든 사람, 회비 미납 또는 기타 사유로 자격이 정지된 모든 회원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카드를 이체 또는 인출하는 사람들의 정확한 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국제 노조는 이러한 조치를 취한 후 15일 이내에 선출된 모든 임원의 이름과 주소를 통보 받아야 한다. 주소마다 적절한 우편 번호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각 지부 노조는 소속된 주 위원회에 동일한 회원 목록을 제공해야 한다. 국제 비서-재무국장의 추천에 따라, 국제 집행위는 이 요건의 빈도 및/또는 내용을 제한하는 본 조항의 수정을 승인할 수 있다.